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2.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난 5월 31일 도라산, 제3땅굴 관광사업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하였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셔틀엘리베이터의 수용능력 한계로 다수의 관광객이 제3땅굴 셔틀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적지 않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 또한, 무료이용자가 전체 인원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노인층의 실향민들이 대부분으로서 시설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 제3땅굴 관광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운영방법 개선의 일환으로 셔틀엘리베이터 요금을 차등 징수하는 한편 시설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토록 함. (안 제4조)
- 시설이용요금 체계를 이원화 함. (안제4조)
 - 셔틀엘리베이터와 기타 시설이용요금을 차등 징수
 - 셔틀엘리베이터 : 일반인 2,000원, 청소년·어린이 1,500원
 - 시설이용료 : 개인 - 일반인 3,000원, 청소년·어린이 2,000원
단체 - 일반인 2,000원, 청소년·어린이 1,500원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5.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
6. 한국군인 및 주한외국 군인과 그 직계가족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문화체육과(☎ 940-4363)
입안자	문화체육과장	박재홍
	관광정책담당	김진성
	담당자	이성근

[별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시 설 명	이 용 구 분		금 액(원)
셔틀엘리베이터	일반인		2,000
	어린이·청소년		1,500
시설사용료	개 인	일반인	3,000
		어린이·청소년	2,000
	단 체	일반인	2,000
		어린이·청소년	1,500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u>제4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 <u>1. 국민·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u> <u>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u> <u>3. 65세 이상의 노인</u> <u>4.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u> <u>5.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u> <u>6.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u> <u>7. 현역군인</u> <u>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u>제4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u> <u>1. 만 65세 이상의 노인</u> <u>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u>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 <u>1. 국민·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u> <u>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u> <u>3.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u> <u>4.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이하의 어린이</u> <u>5.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u> <u>6. 한국군인 및 주한 외국군인과 그 직계가족</u> <u>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원			개			정		안		
구		분	금액 (원)		시설명	이용구분		금액 (원)		
개인	일반인		4,000		서틀 엘리베이터	일반인		2,000		
	어린이 · 청소년		3,000			어린이 · 청소년		1,500		
단체	일반인		3,000		시설 사용료	개인	일반인		3,000	
	어린이 · 청소년		2,000				어린이 · 청소년		2,000	
						단체	일반인		2,000	
							어린이 · 청소년		1,500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존치·이관사무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한 수임기관 변경·사무권한 이양 및 근거법규 개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 본청과 읍·면·동의 사무권한과 책임이 불부합되는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 및 존치·이관사무 조정에 따른 사회복지과 소관사무 2건, 교통행정과 소관사무 2건등 4건 수정
- 상위법 개정 및 존치·이관사무 조정에 따른 사회복지과 소관사무 1건, 허가과 소관사무 1건등 2건 삭제
- 사무권한 이양 및 존치·이관사무 조정에 따른 사회복지과 소관사무 1건, 건설과 소관사무 6건등 7건 신설 등의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 수 정(4건)

- 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 나.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삭 제(2건)

- 가.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의료보호관련 단위사무(2건)
- 나.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중 착공신고 수리사무

3. 신설(7건)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중 개장허가 및 개인묘지설치 단위사무(2건)
-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다.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라.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따른 다음의 권한
 - 마.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 바.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 사.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 명령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개정조례안의 법령적합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법령에 의거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원거리 시민들이 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일선 읍·면·동에서 처리토록 현실화함으로써 시민 불편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건으로서 '96년도 12월 20일 시승격에 따른 전문 개정이후 금년 2월 26일 개정까지 모두 5차례 개정되었음.

- 그동안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02.01.19)을 비롯한 관계법령 개정과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조정등에 따라 13개 단위사무에 대한 수정, 삭제, 신설등 기존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위임근거 법령등 관계법령 적합성에 문제점이 없음.

지 방 자 치 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4·12·2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나. 내용타당성

- '02. 02. 26 개정조례상 위임사무는 총무과등 6개과 11개 위임사무에 34개 단위사무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7개과 17개 위임사무에 52개 단위사무로 조정되어 6개 위임사무에 18개 단위사무가 증가되었음.
- 증가사유로는 공유수면관리법과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건설과 및 사회복지과 소관 7건의 법령 수임사무가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21개 단위사무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되었고,

- 읍면사무중 본청이관과 업무폐지등에 의한 단위사무 삭제3건, 기타 단위사무 명칭변경과 수임기관 변경에 따른 수정5건 등으로 내용면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임사무의 변동현황

(위임사무/단위사무)

소관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후		증 감	
	위임 사무	단위 사무	수정	삭제	신설	위임 사무	단위 사무	위임 사무	단위 사무
계	11	34	4/5	/3	6/21	17	52	6	18
총무과	1	1	-	-	-	1	1	-	-
세무과	3	4	-	-	-	3	4	-	-
사 회 복지과	2	5	2/3	/2	/2	2	5	-	-
건설과	-	-	-	-	6/19	6	19	6	19
도시과	1	9	-	-	-	1	9	-	-
허가과	2	6	-	/1	-	2	5	-	△1
교 통 행정과	2	9	2/2	-	-	2	9	-	-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지난 5월 31일 도라산, 제3땅굴 관광사업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셔틀엘리베이터의 수용능력 한계로 다수의 관광객이 제3땅굴 셔틀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적지 않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 또한, 무료이용자가 전체 인원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노인층의 실향민들이 대부분으로서 시설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 제3땅굴 관광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운영방법 개선의 일환으로 셔틀엘리베이터 요금을 차등 징수하는 한편 시설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토록 함. (안 제4조)
- 시설이용요금 체계를 이원화 함. (안 제4조)
 - 셔틀엘리베이터와 기타 시설이용요금을 차등 징수
 - 셔틀엘리베이터 : 일반인 2,000원, 청소년·어린이 1,500원
 - 시설이용료 : 개인) 일반인 3,000원, 청소년·어린이 2,000원
단체) 일반인 2,000원, 청소년·어린이 1,500원

□ 검토의견

- 금번에 제출된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금년 4월중 제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제3땅굴 셔틀엘리베이터와 DMZ영상홍보관등 민북관광시설 투자사업이 완료되어 개관된 5월31일부터 적용되어왔으나 제3땅굴 셔틀엘리베이터의 수용능력 한계와 만 65세 이상 노인등 무료이용자의 증가로 기존 운영체계로는 합리적인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 ①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용료를 50% 감액 징수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 ② 현행 시설요금 체계를 통합징수 방식에서 셔틀엘리베이터와 기타시설사용료를 분리 징수하여 현장상황에 따라 이용객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 ③ 분리이용시 요금합계액이 현행대비 개인은 500~1,000원 단체는 1,000원씩이 각각 상향조정된 내용으로 관련조항을 부분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와 지방재정법 제26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법적근거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제정 시행이후 불과 2개월여만에 개정시행함에 따른 대외적 공신력 저하와 이용객들에 대한 불만등이 예상됨으로 개정조례 시행전 사전 충분한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 127조 (사용료)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이용 또는 財産의 사용에 대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26조 (國家의 公共施設에 관한 使用料) ①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管理하는 國家의 公共施設로서 地方自治團體가 그 管理에 소요되는 經費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公共施設의 사용에 대한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使用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